

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정 2004. 5. 7

개정 2015. 12. 10

개정 2020. 9. 1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-15번지 한국체육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산학협력단의 업무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한국체육대학교지 내에 협력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축조
7. 학교기업 운영 관리 및 지원 <개정 2020.9.17.>
8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속시설, 연구협력시설, 그 밖에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명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행정사무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근무기간,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의 설립 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4.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법인의 재산

제11조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2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3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비밀유지의무) 산학협력단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정관의 변경)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6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 해산 시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7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
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 공고방법은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및 한국체육대학보에 공고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2. 10.)

이 정관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17.)

이 정관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